

전주지방법원 2019. 8. 13 선고 2017가단22355 판결 [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]

전 문

원 고 A 교회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19. 7. 23

판 결 선 고 2019. 8. 1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43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7, 16, 1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ㄱ"부분지상 벽돌,시멘트 구조및 조립식 패널 지붕단층건물 80㎡를 철거하고, 위 "ㄱ" 부분 임야를 인도하며,
나. 3,336,640원 및 이에 대한 2019. 7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건물 철거 ·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

가. 인정 사실

1) 원고는 2011. 6. 16.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437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고 한 다)에 관하여 2011. 4.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피고는 2011. 6. 16. 이전에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기재 "ㄱ" 부분 80㎡ 지상 에 벽돌,시멘트 구조 및 조립식 패널 지붕 단층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축조한 다음,2011. 6. 16.부터 2019. 6. 15.까지 위 "ㄱ" 부분 임야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를 그 부지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. [인정근거] 갑 제1, 2, 4호증, 갑 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 및 영상,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그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,입증하지 못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"ㄱ" 부분 지상에 축조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취득일인 2011. 6. 16.부터 2019. 6. 15.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·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.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

부동산의 점유 ·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.

감정인 편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사건 토지의 2011.

6. 16.부터 2019. 6. 15.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3,336,640원¹⁾ 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·사용으로 인한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합계 3,336,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. 7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대준

별지

1)= 3,112,640원 + (56,000원 X 4)